

신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법제 주요 내용

임목삼 |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

##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현재 전 세계 58개국과 19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타결하였고, 그 가운데 54개국 16건의 FTA 협정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메르코수르(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동시다발적이고 전방위적인 FTA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FTA의 목적은 양국의 상품교역 당사자에게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개방(투자, 서비스)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다.<sup>2)</sup>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제도<sup>3)</sup>는 국내의 소비자보호 및 산업보호 측면이나 수입관세부과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며, 모든 협정 당사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를 기준으로 국제협정 비당사국에 대한 차별 또는 당사국에 대한 관세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등의 적용 시에도 원산지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 2020. 4월 방문.

2 임목삼, "FTA 대체재기준의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실무적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1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20. 2, p.116.

3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해당 원산지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는 현품 등에 해당 원산지를 표시하는 판정→확인→표시라는 일련의 원산지관리 절차를 총체적으로 규정한 개념이다(안소영, 미국의 특혜·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상관관계 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2019. 12, p.2.).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주요 법제는 「대외무역법」<sup>4)</sup>과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sup>5)</sup>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확인이 용이하나, 영미 법계인 미국은 원산지와 관련된 법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아 일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미국의 원산지 관련 특혜·비특혜 법제

미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및 각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등의 무역 관련 특혜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등의 경제 성장을 꾀함과 동시에 미국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국민은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결정과 원산지표시 등 관련 절차(원산지증명 포함)를 스스로 준수하고 있다.<sup>6)</sup>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공여하는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국 무역법의 주요 집행 기관으로 수입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 법원의 결정이나 원산지 관련 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관련 법제는 전반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특정 무역법을 갖추고 있지 않다.<sup>7)</sup>

4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 등.

5 FTA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및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조사 등.

6 미국의 「관세현대화법(Customs Modernization Act)」 제정 이후 「관세법(규정)」의 준수 책임을 수입자로 명확히 하였다(「북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 제 6장 「관세현대화법」(P.L. 103-182) 및 19 USC §1508).

7 Jones, Vivian C.·Wong, Liana,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Origin, CRS Report, 2020. 3, p.2.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관련 법제는 최혜국대우(MFN) 협정세율 적용, 원산지표시, 할당, 정부조달 및 무역구제조치 등 비특혜(Non-preferential)와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법 관세법(19 U.S.C.; United States Code, Tariff Act of 1930, 이하 미 관세법)」과 「미국 연방규정 관세규정(1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이하 미 관세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공여하는 관세특혜 등 특혜(Preferential)에 대해서는 협정별 개별 이행법을 제정하고 협정의 일부는 미 관세법 및 미 관세규정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법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특혜관세규정은 WTO의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원산국 정의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표시 요건,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할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미국과 체결한 RTA(NAFTA, FTA 등) 대상 국가들이나 특정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등 수입 관련 특별프로그램의 적용 자격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며 비특혜원산지규정과 달리 각 협정별 또는 협약 간 원산지기준이 다양하다.

〈표-1〉 비특혜와 특혜원산지 비교<sup>8)</sup>

구분	목적	비고
비특혜원산지	- 시장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	원산지표시
	- 보복관세, 덤핑관세 등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일반원산지증명
	- 사우디 등 일부국가 수입통관時 필수제출	
특혜원산지	관세감면 또는 면제	FTA원산지증명

「미 관세법」은 미국의 관세영역<sup>9)</sup>에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원산지기준을 따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수립하여 다른 WTO회 원국에게 원산지기준으로 무역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sup>10)</sup>

8 안소영, 전계서, p.4.

9 19 CFR, §134.1. 미국의 관세영역은 50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며 버진아일랜드와 괌은 포함하지 않는다.

10 Jones·Wong, ibid, p.3.

「미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품의 비특혜원산지는 미국 세관의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수입품의 제조·생산 또는 성장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비특혜관세규정과 특혜관세규정은 원산지를 각기 규정하고 있다.

### III. 미국의 비특혜원산지규정 주요 내용

미국의 비특혜원산지는 적용 분야에 따라 「WTO원산지규정협정」, 「미국승용자동차표시법(America Automobile Labeling Act)」, 「미국산 우선구매법(1933 Buy America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 관세법(15 U.S.C., 19 C.F.R.)」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sup>11)</sup>

#### 1. WTO원산지규정

1995년 발효된 「WTO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 HS 6단위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의 WTO원산지규정은 비특혜원산지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WTO원산지규정에서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최혜국과의 교역에 있어 원산지국을 결정하는 것 등<sup>12)</sup>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인 변형기준<sup>13)</sup>을 제시하고 있다.

11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협회, 2014. 6, p.42.

12 GATT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3조의 최혜국대우(MFN) 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관세제도 및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Part1. Art.1.2).

13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및 주요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으로 구분한다.

〈표-2〉 미국의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 관련 법제<sup>14)</sup>

비특혜원산지 관련 법제	특혜원산지 관련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원산지규정협정」</li> <li>• 「미국산 우선구매법」</li> <li>• 「미국승용자동차표시법」</li> <li>• 「연방거래위원회법」</li> <li>• 판례법</li> <li>• 「미 관세법」과 「미 관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C.F.R. §102<sup>15)</sup></li> </ul> </li> <li>- 원산지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U.S.C.§1304</li> <li>· 19 C.F.R.§102, §134</li> </ul> </li> <li>-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U.S.C.§2518(4)(B)</li> <li>· 19 C.F.R.§177.22</li> </ul> </li> <li>- 섬유 및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U.S.C.§1854</li> <li>· 19 U.S.C.§3592</li> <li>· 19 C.F.R.§102</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북미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요르단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호주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바레인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오만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페루 무역진흥협정 및 이행법」</li> <li>•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콜롬비아 무역촉진협정」</li> <li>• 「파나마 무역진흥협정 및 이행법」</li> <li>• 「일본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li> <li>• 「카리브해 연안국 무역협정 이행법(CBTPA)」</li> <li>•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li> <li>• 「일반관세특혜제도(GSP)」</li> </ul>

## 2. 「미국승용자동차표시법」<sup>16)</sup>

미국에 수입되는 승용자동차(12인승 이하)의 원산지 표시정보 및 표시방법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4 U.S. CBP, What Every Member of the Trade Community Should Know About: U.S. Rules of Origin, An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 2004. 5, p. 11( www.uscode.house.gov와 www.cbp.gov 참조).  
 15 NAFTA, 모로코와 바레인 및 이스라엘과의 FTA 직물 및 의류제품에 적용.  
 16 49 U.S.C. §32304.

예를 들어, 승용차에 미국과 캐나다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구매가격의 70% 이상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부가가치가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가액의 15% 이상이 미국 및 캐나다 이외에서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2개국 이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3. 「미국산 우선구매법」<sup>17)</sup>

「미국산 우선구매법(1933 Buy American Act)」에 따라 미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비제조품, 재료, 부품 및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이나 재료, 부품에 대해서만 공공용품으로 구매해야하고, 공공 건물의 건축 등 공공사업에도 미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재료, 부품만을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4. 「연방거래위원회법」<sup>18)</sup>

「미 관세법」 제45a조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모직제품과 모피제품, 섬유직물제품에 관하여 미국산(Made in the U.S.A. 또는 Made in America)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5. 판례법

미국 법령에서 별도의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공정 등을 통하여 새롭고 다른 제품으로 변형된 마지막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

17 41 U.S.C. §8302, §8303.

18 15 U.S.C. §45a, §68, §69, §70.

## (1) Anheuser-Busch사 판결<sup>19)</sup>

미국의 Anheuser-Busch사는 스페인으로부터 코르크를 수입하여 병마개를 만든 후 병맥주를 수출하고, 수출 이후 코르크에 부과되었던 수입관세환급을 신청했으나, 관세당국 코르크가 병맥주의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미비를 이유로 관세환급을 불허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입코르크 가공(절단, 구분, 세정, 건조)과 관련하여 모든 변화가 가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가공은 새롭고 다른 제품, 즉 다른 명칭(name)이나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갖는 변형이 일어나야 한다고 판시하여 관세환급을 불허한 판결을 내렸다.

## (2) Belcrest Linens사 판결<sup>20)</sup>

Belcrest Linens사는 홍콩에서 베개피를 수입하는데, 수출자가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직물에 재단 및 테두리 가공과 표백·다림질·포장 공정을 거쳤음에도 관세당국은 해당 공정을 단순한 조립으로 판단하고 직물을 공급한 중국을 원산지로서 하여 90%의 관세를 적용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홍콩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 다른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졌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19 Anheuser-Busch Brewing Association v.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20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표-3〉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 관련 주요 판례

사건명	판시 내용
Gibson-Thomsen 판결 <sup>21)</sup>	결합되는 제품의 특성이 남아있는 제조 또는 조립 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음
Uniroyal 판결 <sup>22)</sup>	만약 제조나 결합 공정이 사소한(minor) 것이어서 결합된 부분의 특성이 유지되고, 그 부분이 완제품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해당 공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음
National Hand Tool 판결 <sup>23)</sup>	수입산 부속이 수입 전 최종적인 모습(final shape)으로 제조되고 미국 내에서의 공정을 거친 후에도 수입 당시와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음
Koru North American 판결 <sup>24)</sup>	머리가 제거된 호키(hoki fish)가 해동되고, 비늘이 제거되고, 뼈를 바르고, 다듬고, 재냉동 및 포장되어 개별 필렛화된 경우에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어 해당 공정국을 원산지로 함
Data General 판결 <sup>25)</sup>	외국산 PROM (프로그램이 가능한 읽기전용 메모리칩)의 본질적인 부분, 즉 상호접속과 저장된 메모리는 프로그래밍 공정에 의하여 설립된다고 보아, 실질 변형이 일어났음

## 6. 「미 관세법」과 「미 관세규정」

### (1) 원산지기준

비특혜에 관한 원산지기준은 미 관세규정에서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완전생산된 제품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며, 당사국의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 및 역외산 원재료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면 생산국을 원산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단일 원재료의 원산지, 대체가능물품의 경우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에 원산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

21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22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5, 542 F. Supp. 1026, 1030 (1982), aff'd 702 F.2d 1022 (Fed.Cir. 1983).

23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24 Koru North American v. United States, 701 F.Supp. 229 (CIT 1988).

25 Data General v. United States, 4 CIT 182 (1982).

26 19 C.F.R. §102.11(a)(b).

세트물품,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특성 부여에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결정하고<sup>27)</sup>, 단순가공생산물과 단순조립생산물은 당해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에 각각 원산지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생산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sup>28)</sup>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충 원산지기준인 대체기능물품, 최소허용기준, 간접재료 및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sup>29)</sup>

섬유 및 의류에 관한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 관세법」과 「미 관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MFN을 대상으로 하여 이스라엘산을 제외하고 모든 소비를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미 관세법」과 수량제한관리에 적용된다.<sup>30)</sup>

「미 관세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 따른 「미 관세법」 원산지기준에 세부적인 적용대상 등을 추가하여 원산지기준을 중복규정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일반적인 원산지기준은 일국에서 완전생산된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그 국가를 원산지 지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yarn)은 방사를 한 국가를, 직물은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sup>31)</sup> 섬유나 실 이외 의류의 경우는 한 국가에서 모두 봉제공정이 수행된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sup>32)</sup>

직조 이후의 공정 즉 염색, 프린팅 등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실크나 면화 및 인조섬유, 천연섬유로 분류된 섬유의 경우에는 염색 및 프린팅 공정 이후 표백, 수축, 축융, 내핑(napping), 데커링(decating), 영구 보강, 가중(weighting), 내구성성을 위한 엠보싱(embossing) 또는 모이어링(moireing) 등의 가공 공정을 둘 이상 수행한 국가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sup>33)</sup>

이외에 원산지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중요한 봉제나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마지막 국가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한다.<sup>34)</sup>

27 19 C.F.R. §102.11(c).

28 19 C.F.R. §102.11(d).

29 19 C.F.R. §102.12~§102.17.

30 19 C.F.R. §102.21.

31 19 U.S.C. §3592(b)(1)(A)(B)(C).

32 19 U.S.C. §3592(b)(1)(D).

33 19 U.S.C. §3592(b)(2).

34 19 U.S.C. §3592(b)(3).

## (2) 원산지표시

「미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미 관세규정」은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증명과 검증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 관세법」은 예외적인 경우<sup>35)</sup>를 제외하고 외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읽기 쉽고(legibly), 지워지지 않고(indelibly), 영구적인(permanently) 방법으로 미국의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물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원산지의 영어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은 원산지표시에 관해 원산지를 나타내기 적합한 단어 및 문구 또는 약어의 철자를 결정하거나 인쇄, 등사, 스탬핑, 낙인, 박음질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물품(또는 용기)의 적당한 장소에 적합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수입물품 또는 통상 수입물품과 결합되는 물품으로, 수입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전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위조나 실수(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단어나 상징의 추가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36)</sup>

「미 관세법」은 원산지표시방법과 관련하여, 주물제품이나 주조된 전봇대, 압축가스실린더, 철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철 파이프, 강철, 스테인리스 강철 등에도 금형 양각 각인, 주형을 덮은 글자, 식각, 음각 등 영구적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은 직경의 파이프나 부품의 경우에는 용기 또는 묶음에 꼬리표를 붙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sup>37)</sup>

만일 원산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가 안 되어 있거나 수입 후에 표시된 경우는 최종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sup>38)</sup>

35 원산지표시로 인해 제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거나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미가공 물질인 경우,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여 판매할 의도가 없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없더라도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와 일반적인 컨테이너, 특정 커피와 향신료, 실크 등 (19 U.S.C. §1304(a)(3) 및 §1304(f)-(h)).

36 19 U.S.C. §1304(a).

37 19 U.S.C. §1304(b)-(e).

38 19 U.S.C. §1304(i).

「미 관세규정」은 「미 관세법」에 더하여 세부적인 표시대상, 표시방법과 위치, 승인된 국가명이나 지역명의 표기, 표시의 제거 및 파손 등에 관한 처벌, 표시위반에 따른 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39)</sup>

「미 관세규정」에서 원산지표시 대상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또는 그 포장용기)이며, 미국으로 다시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sup>40)</sup>

「미 관세규정」은 ‘J-List exceptions’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sup>41)</sup> J-List에서는 예술작품, 삼베, 단추, 담배, 달걀, 마룻바닥, 조화, 꽃, 운모, 못, 스테이플, 그물, 리본, 나사못, 전선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J-List에 해당하는 품목일지라도 이들 물품이 용기에 담겨져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종구매자에게 도달하는 제일 바깥쪽의 포장용기에 그 내용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CBP는 「미 관세규정」에 따라 주형조각, 주조, 식각 또는 조각 그리고 천으로 된 라벨 등과 같이 특별한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sup>42)</sup>

### (3) 무역구제조치

「미 관세법」 제7편에 규정된 반덤핑관세,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따른 무역구제조치는 통상 원산지별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해당 수입물품이 추가관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무역구제조치의 우회방지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비특혜원산지기준에 따른다. 즉 반덤핑관세 등에 대하여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피조치대상국은 제3국 또는 수입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데, 이 때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3국산 물품에 대하여 피조치 대상국산 물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가능하다.

39 19 C.F.R. §134.

40 19 C.F.R. §134.12.

41 19 C.F.R. §134.32.

42 19 C.F.R. §134.42.

위 결정 시 ① 미국(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및 ②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국으로부터 미국(또는 제3국)으로 수입된 부품의 가액이 최종제품의 총 가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다.

특히 무역구제조치의 원산지 조사는 「집행 및 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 EAPA)」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수입자·생산자·수출자·해외공급자·유통업체·노동조합·농민단체 등 제보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적법한 제보 또는 상무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세관은 15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중간조치, 300일 이내에 최종결정이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업체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일 경우, 불리한 추정 가능하다.

국내생산물품 및 수출품의 미국 원산지에 대한 규제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부 '불공정한 사기 행위 및 관행의 금지'에 명시하고 있다.<sup>43)</sup>

「미 관세규정」에서는 원산지 증명과 검증 등 관세 행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sup>44)</sup>

43 15 U.S.C. §45.

44 김한성 외, 무역활성화를 위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67.

## IV. 미국의 특혜원산지규정 주요 내용

### 1. 개요

미국의 특혜원산지규정은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일반관세특혜제도(GSP) 등과 같은 일방적 특혜규정과 한-미 FTA와 같은 양자 간 협정에 의한 상호적 특혜규정으로 구분된다.<sup>45)</sup>

특혜원산지 요건은 협정마다 다르며, 요건 충족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미국의 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일방적 특혜규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NAFTA)」에 관하여는 「미 관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장(Chapter)에서 규정<sup>46)</sup>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상호적 특혜규정은 한 개의 조문에 부속서로서 규정<sup>47)</sup>하고 있다.

또한 「미 관세규정」 원산지규정 조문은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원산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NAFTA, 미-모로코 FTA, 미-바레인 FTA로 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 관련 원산지규정은 이스라엘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품의 원산지판정에 적용하도록 규정<sup>48)</sup>하고 있다. 따라서 특혜원산지와 관련한 NAFTA의 원산지기준은 미국의 대표적인 특혜원산지규정으로 볼 수 있다.

45 정재호,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 p. 54.

46 19 C.F.R. §181.

47 19 C.F.R. Part 10.

48 19 C.F.R. §102.

## (1) 원산지증명

NAFTA는 4가지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sup>49)</sup>

우선,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당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둘째, 특혜관세 신청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셋째, 세관 요청 시 원산지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넷째, 특혜신청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즉시 특혜관세 신청을 정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단, 수입신고 시점에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sup>50)</sup>

미국은 특혜원산지 판정 시, FTA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절차적 요건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인의 이의제기 가능기간은 수입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2) 원산지검증<sup>51)</sup>

NAFTA는 수입품이 원산지증명서에 증명된 대로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수입국 세관의 수출자 혹은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검증은 일차적으로 서면 질문서와 검증 방문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생산자에게 질문서<sup>52)</sup>를 보내 수출자·생산자의 상품이 NA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면 세관검증 방문을 통해 추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수입국 세관 당국이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할 경우, 그 수출자·생산자에게 결과를 서면(진술서)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49 장근호, “미국 특혜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호 제1권, 한국관세학회, 2016. 2, p.5.

50 19 C.F.R. §181.31.

51 김한성 외, 전거서, p.71~73.

52 CBP 서식 28은 미국 세관이 미국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서식인데, 원산지검증에는 서식 28에 ‘UKFTA verification’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한다. 미국 수입자는 서식 28을 수출자에게 보내 자료 제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CBP 서식 29는 결과통지(Notice of Action) 서식으로 미국 세관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할 때 사용된다(신상화,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2, p.148).

원산지검증을 위해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영역에 검증 방문을 실시하여 수출자·생산자 상품의 NAFTA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검증 방문을 실시하기 전에 세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수출자·생산자에게 방문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검증 방문 대상 NAFTA 국가 영역의 세관당국 및 대사관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수출자·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있어야 방문이 가능하고, 검증 방문의 대상인 수출자·생산자는 검증 동안 참관할 두 명의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 수출자·생산자가 방문예정 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증 방문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문기간 동안 협조하지 않는 경우, NAFTA 관세특혜가 철회될 수 있으며 수출자·생산자는 관세특혜 철회결정에 대하여 검토 및 불복할 권리를 가진다.

## 2. 일방적 특혜원산지규정

일방적 특혜규정으로는 일반관세특혜제도(GSP), 「카리브해 연안국 무역협정 이행법(CBTPA)」,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등이 있다.<sup>53)</sup>

일반관세특혜제도(GSP)의 원산지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는 「미 관세법」 19 U.S.C. §2463(a)(2)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176에 있다. 「카리브해 연안국 무역협정 이행법」과 관련한 원산지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는 NAFTA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성장기회협정」상 원산지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는 「미 관세법」 19 U.S.C. §3721<sup>54)</sup>과 「미 관세규정」 19 C.F.R. §10.176에 근거한다.

■■■■■■■■■■

53 www.cbp.gov 참조.

54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완전획득(성장, 어업, 채굴 등)원칙과 충분가공원칙(3개국 이상의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변형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35% 부가가치가 생성되어야 하며, 제품가격에서 최대 15%는 미국에서 기여해야 함), 「미 관세법」에 특정 직물 및 의류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 3. 상호적 특혜원산지규정

상호적 특혜원산지규정은 NAFTA 및 한-미 FTA를 포함하여 16개의 협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특혜협정에 대하여 의회에서 별도로 이행법을 제정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필요한 이행법(Implementation Act)이 제정되어야 한다.

각 이행법은 특혜협정의 국내법 편입을 위한 승인 및 체결국과의 특혜관세, 원산지, 관세행정 등을 규정한다.

미국은 2020년 현재 16개의 FTA 협정을 발효하고 있다.<sup>55)</sup>

다음은 협정별 발효시기와 원산지 관련 법적 근거이다.

**(1)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1985년 9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2112 note

**(2)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1994년 1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301~§3473과 「미 관세규정」 19 C.F.R. §102, 19 C.F.R. §181과 Appendix

**(3) 「요르단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01년 12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2112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701~§10.712(sub part K)

**(4) 「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04년 1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401~§10.490(subpart H)

**(5)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04년 1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501~§10.570(subpart I)

**(6) 「호주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05년 1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721~§10.748(subpart L)

55 미국-캐나다 FTA는 1989년 1월에 발효된 바 있으나, 1991년부터 캐나다 및 멕시코와 NAFTA 양자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 1월부터 NAFTA가 발효되었다.

**(7)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06년 1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761~§10.787(subpart M)

**(8) 「바레인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06년 6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801~§10.827(subpart N)

**(9)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06년 순차적 발효<sup>56)</sup>)**

- 「미 관세법」 19 U.S.C. §4001~§4111과 「미 관세규정」 19 C.F.R. §10.581~§10.625(subpart J)

**(10) 「오만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09년 1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861~§10.890(subpart P)

**(11) 「페루 무역진흥협정 및 이행법」 (2009년 2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901~§10.934(subpart Q)

**(12)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법」 (2012년 3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1001~§10.1034(subpart R)

**(13) 「콜롬비아 무역촉진 협정」 (2012년 5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3001~§10.3034(subpart T)

**(14) 「파나마 무역진흥협정 및 이행법」 (2012년 10월 발효)**

- 「미 관세법」 19 U.S.C. §3805 note와 「미 관세규정」 19 C.F.R. §10.2001~§10.2034(subpart Q)

최근에 발효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2020년 1월)은 아직 「미 관세법」과 「미 관세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56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FTA는 미국과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이다. 한-중미 FTA와 같이 국가별 상황에 따라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

## V. 맺으며

원산지 관련 일반적인 법제는 비특혜원산지제도와 특혜원산지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특혜원산지인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에서 다루고, 그 외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법」과 「FTA관세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비특혜원산지는 WTO원산지규정협정을 위시로 하여 「미 관세법」, 「미국자동차표시법」, 「미국산 우선구매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에 규정하고 있고, 특혜원산지는 NAFTA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미 관세법」 19편과 「미 관세규정」 19편에 규정하고 그 외 상호적 특혜제도는 하나의 조문에 부속서로 분산하여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원산지제도를 확인하기가 용이치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반원산지기준은 WTO원산지기준과 판례법에 따라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하고는 NAFTA 협정을 조문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제 국가이기도 하지만 주요 교역대상이 북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산지 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주요 교역대상이면서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법제 구조이다.

그러나 한-미 FTA 이후에 대미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소비시장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NAFTA를 중심으로 원산지제도를 편성한 미국의 원산지제도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한성 외, 무역활성화를 위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신상화,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안소영, 미국의 특혜·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상관관계 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2019.
- 임목삼, “FTA 대체재기준의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실무적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1권 1호, 한국 관세학회, 2020.
- 장근호, “미국 특혜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호 제1권, 한국관세학회, 2016.
- 정재호,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협회, 2014.
- Jones, Vivian C·Wong, Liana,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Origin, CRS Report, 2020.
- U.S. CBP, What Every Member of the Trade Community Should Know About: U.S. Rules of Origin, An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 2004.